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70호 2025. 12. 4.(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예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53호)

공 고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1585호)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608호)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 2025-26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예천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석정리 37-2번지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예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비도시지역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신설	2	산불방지 대응센터	공공청사	예천읍 석정리 37-2번지	-	증) 3,604	3,604	-	

■ 공공청사 결정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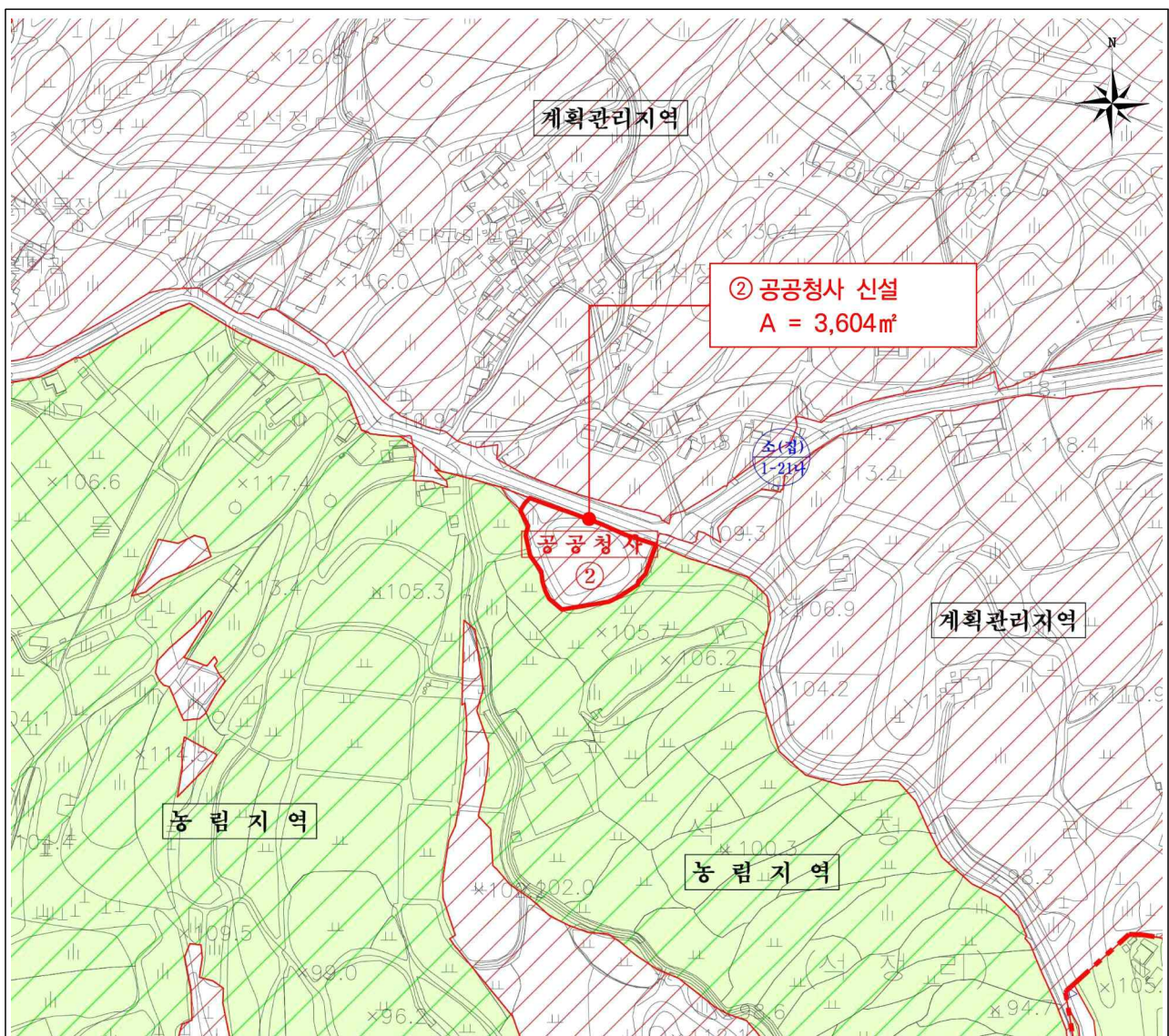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2	산불방지 대응센터	· 공공청사(산불방지 대응센터) 신설 A = 3,604㎡	· 산불방생 시 신속한 출동에 따른 초동 진화로 대형 산불로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공공청사(산불방지 대응센터) 신설

2. 군관리계획 결정 도서 및 지형도면 등 : 게재 생략

※ 아래 결정도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외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함

3. 고시 관련 세부내용은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 가능 합니다.

[참고] 군관리계획 결정도



예천군 공고 제2025-1585호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예 천 군 수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 사업규모 : 900,196.8㎡(변경면적 제시필요)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2. 공개기간 및 장소

- 공개기간 : 2025년 12월 4일 ~ 12월 20일(16일간)
- 공개장소 : 예천군 홈페이지 (<https://www.ycg.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ss.go.kr>)

3. 공개내용

-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붙임 참조)

4. 기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301), 예천군 도시과(☎054-650-8975)로 문의. 끝.

붙임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식 끝.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2025. 11.



제1장 사업의 개요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경상북도 북부권으로 도청을 이전하여 도청을 중심으로 행정기능, 문화, 산업 및 정주 환경이 갖추어진 자족도시 육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특색 있고 친환경적인 신도시 건설 및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함
- 또한,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지원시설용지(산업시설 및 R&D) 조성, 상업업무시설용지(업무용지) 및 주거용지(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인구유입 및 신도시 자족기능 확충
- 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1단계, 인구 10만명의 도시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에 이어 도청신도시로의 완성을 위한 금회 3단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1.2 실시근거

가. 환경영향평가

- 본 사업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금회 3단계 사업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별표3] 【비고1】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임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6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규정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 제1항 제2호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표 1.2-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구 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 사업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 중 사업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비 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협의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등을 받기 전으로 한다. 가.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본 사업	○ 사업지구 면적 : 900,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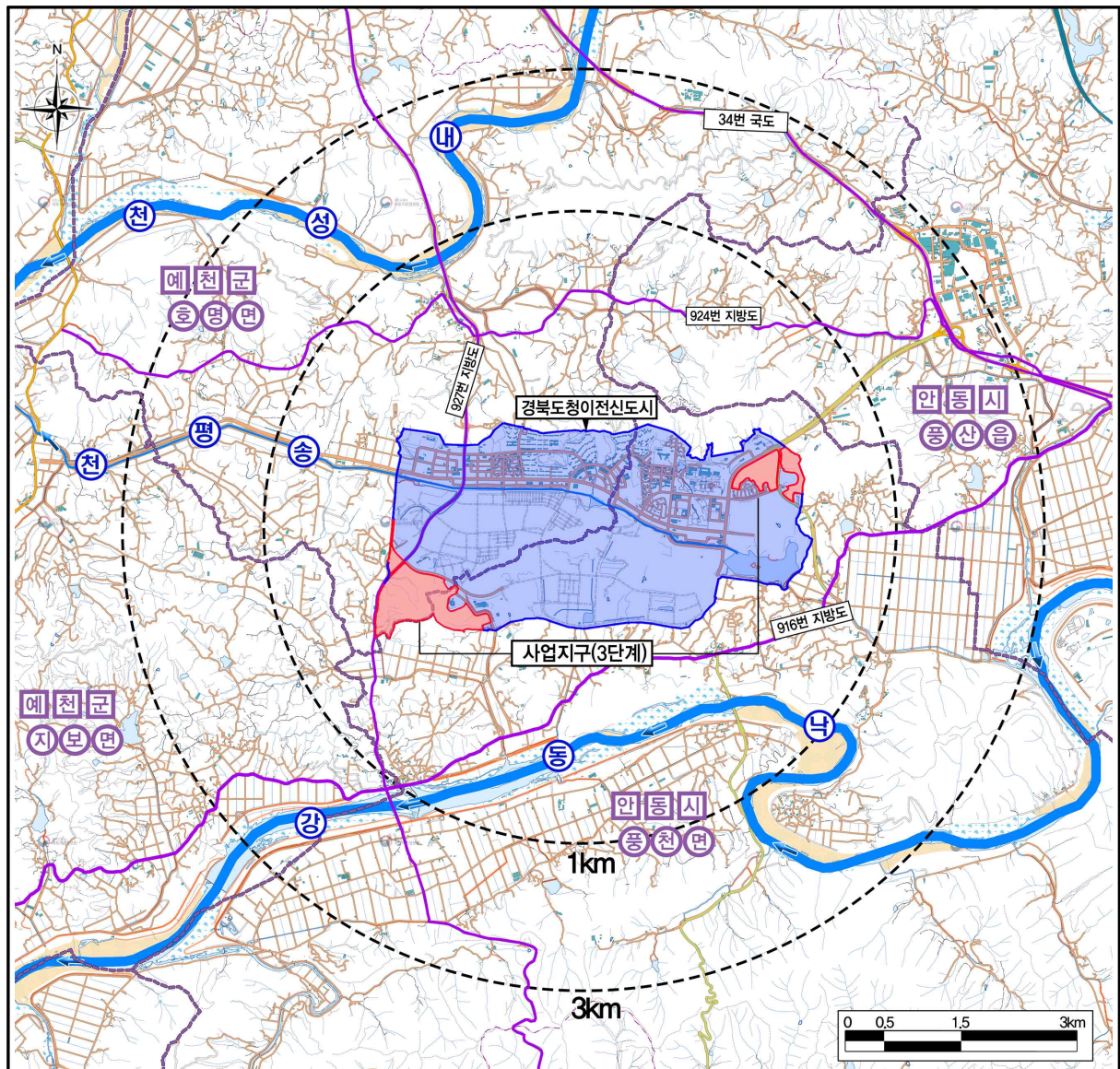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실시

〈표 1.2-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승인기관장 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 해야 한다.



(그림 1.2-1) 사업지구 위치도

1.3 사업의 추진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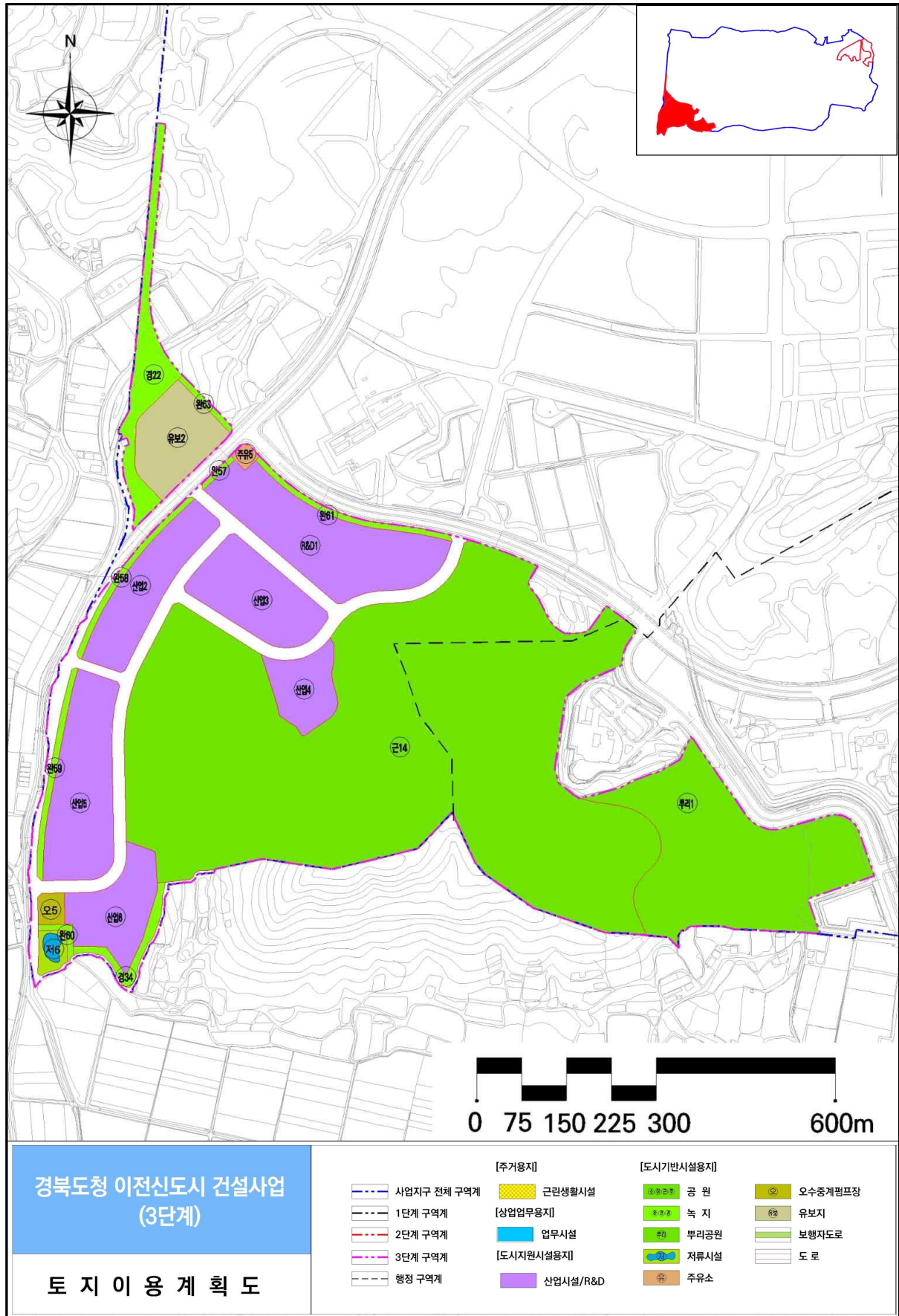
- 2008.06.09 : 경상북도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 ·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08-398호)
- 2010.01.04 : 도청이전신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구지방환경청)
※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
- 2010.05.04 : 도청이전신도시 사업대상지 지정 고시(경북 고시 제2010-168호)
- 2010.11.19 : 도청이전신도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구지방환경청)
- 2012.06.28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대구지방환경청)
※면적 : 4,897,501㎡(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
- 2016.02.22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1단계) 공사 완료(경상북도 공고 제2016-288호)
- 2017.08.28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평가과-3954)
※면적 : 5,564,014.6㎡(경북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지정 면적 : 10,965,784㎡)
- 2018.03.08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7차) 및 실시계획 승인(경북 고시 제2018-72호)
- 2018.03.23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공사 착공
- 2018.12.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옹벽 계획 변경)
- 2020.03.02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8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경북 고시 제2020-65호)
- 2020.03.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호민지 조성계획 변경)
- 2020.04.23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2단계)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경북 고시 제2020-136호)
- 2021.05.03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9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경북 고시 제2021-137호)
- 2021.08.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선도지구)
- 2021.11.22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10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4차) 승인(경북 고시 제2021-392호)

- 2022.06.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KT 데이터센터, 제8호 근린공원 변경 등)
- 2022.07.28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11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5차) 승인(경북 고시 제2022-223호)
- 2022.09.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마스터플랜)
- 2022.12.13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 보완 요청
- 2023.02.17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보완) 제출
- 2023.03.16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서 협의(환경평가과-1606호)
- 2023.05.25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경북 고시 제2023-153호)
- 2023.10.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호텔부지 확장)
- 2023.12.07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13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7차) 승인(경북 고시 제2023-396호)
- 2024.10.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검토(업무용지 신설, 자동차도로 선형 변경)
- 2024.09.23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 2024.09.23~10.07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2024. 10.29~11.12 :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15일간)
- 2025.02.06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개발계획 변경(14차) 및 2단계 실시계획 변경(8차) 승인(경북 고시 제2025-38호)
- 2025. 06.11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5. 06.12~07.18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07.03)
- 2025. 11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협의요청(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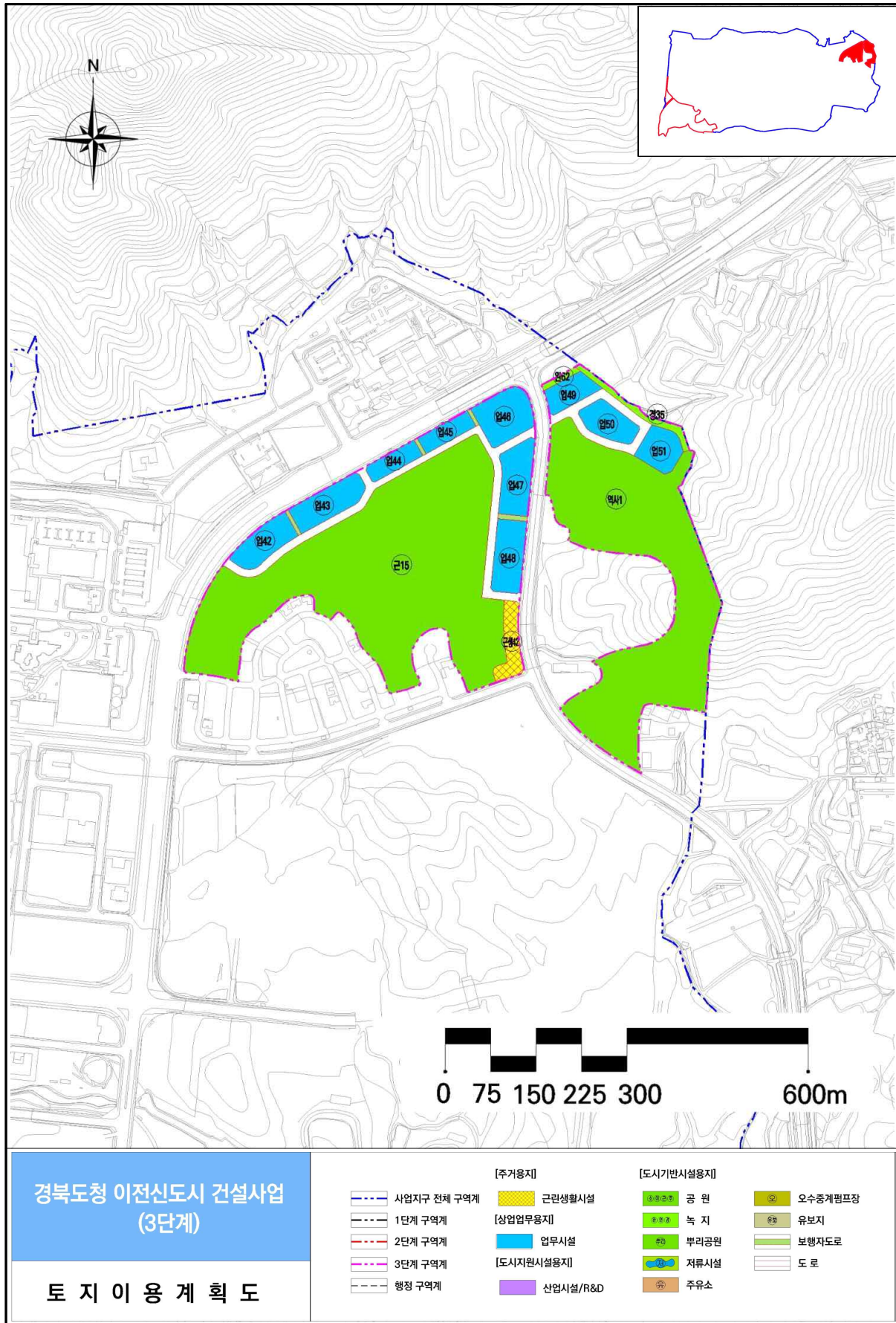
1.4 사업의 내용

- 사업 명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 위 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 사업 규모 : 총면적 10,966,305.5㎡ 중 **금회 3단계 900,196.8㎡**
- 추정 사업비 : 총 2조 1,586억원
- 사업 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 사업 기간 : 2024년 ~ 2027년
- 승인 기관 : 경상북도
- 협의 기관 : 대구지방환경청
- 금회(3단계)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3단계	
			면적(㎡)	구성비(%)
총 계			900,196.8	100.0
주거용지	계		3,694.0	0.4
	근린생활시설		3,694.0	0.4
상업업무 시설용지	계		47,483.0	5.3
	업무용지		47,483.0	5.3
도시지원 시설용지	계		151,580.0	16.8
	산업시설		110,376.0	12.3
	R&D		41,204.0	4.6
도시기반 시설용지	계		678,894.8	75.4
	공원· 녹지	소계	643,024.9	71.4
		근린공원	445,866.0	49.5
		역사공원	77,551.1	8.6
		완충녹지	14,137.0	1.6
		경관녹지	24,186.0	2.7
		뿌리공원	78,075.8	8.7
		저류시설	3,209.0	0.4
	도로	소계	32,308.9	3.6
		자동차도로	31,274.9	3.5
		보행자전용도로	1,034.0	0.1
	오수중계펌프장		2,360.0	0.3
	주유소		1,201.0	0.1
	유보지		18,545.0	2.1



(그림 1.4-2) 토지이용계획도(안) 상세도 (1/2)



(그림 1.4-2) 토지이용계획도(안) 상세도 (2/2)

제2장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2.1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음

가.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나. 주민 등 관계 행정기관

- 지역주민
- 경상북도
- 안동시, 예천군
- 대구지방환경청

다.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은 다음과 같음

〈표 2.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람기간		○ 2025년 06월 13일 ~ 2025년 07월 18일 (20일 이상,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공람 공고	신문공고	○ 대한경제 ○ 경북도민일보, 일간경북신문
	정보통신망	○ 안동시 홈페이지 ○ 예천군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공람장소		○ 경상북도개발공사 도청신도시사업단 ○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 풍천면 행정복지센터 ○ 예천군 도시과, 호명읍 복합커뮤니티센터
공람내용 및 관계도서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초안요약서
의견 제출기간		○ 2025년 07월 29일까지 (공람기간 종료 후 7일 이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고시공고 #구인구직 #자치법규 #시장과의대화 #자치법규시스템

29.3°C

미세먼지 -µg/m³ 측정중

민원안내

시민 참여

안동 소개

시정 소식

정보공개

분야별 정보

시정 소식

안동 소식

- 고시/공고
- 입법 예고
- 입법정보(일반)
- 공직사합
- 입법정보(상하수도)
- 감사 결과
-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상하수도물 불회계)
- 분묘개장 공고
- 유관기관 공지/소식
- 타 자치단체 소식

행사 알림

시정 홍보

카드뉴스

전자간행물 자료실

영상 갤러리

법무행정정보

전체

현재 페이지 1 / 전체 페이지 2695

제목

검색

전체

고시

일반 공고

자유 공고

번호	공고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6945	안동시 공고 제2025-1482호	최종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주간개별형 11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노인장애인과	2025-06-23	15
26944	안동시 서구동 공고 제2025-12호	서구동 통장 확장 공고(제11통, 제15통)new	서구동	2025-06-23	12
26943	안동시 공고 제2025-1481호	2025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new	노인장애인과	2025-06-23	10
26942	안동시 공고 제2025-1479호	건설공사(건축공사)안전점검 수행기관 재공고new	채용진흥과	2025-06-23	21
26941	안동시 도산면 공고 제2025-14호	2025년 도산면 어차원 보로감시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도산면	2025-06-23	38
26940	안동시 공고 제2025-1478호	전기사업의 알수인가공고(의물면 (주)실크로드)new	지역경제과	2025-06-23	6
26939	안동시 풀천면 공고 제2025-35호	2025년 풀천면 어차원보로감시원 채용 공고new	풀천면	2025-06-23	53
26938	안동시 공고 제2025-1477호	2025 안동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 '웃니겨 안동장터' 참가자 모집(2차) ...	농촌경제진흥과	2025-06-23	34
26937	안동시 공고 제2025-1448호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	지방시대정책실	2025-06-23	33
26936	안동시 도산면 공고 제2025-13호	도산면 이장 확장 공고(서부1리)	도산면	2025-06-20	60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고시공고 #구인구직 #자치법규 #시장과의대화 #자치법규시스템

29.3°C

미세먼지 -µg/m³ 측정중

민원안내

시민 참여

안동 소개

시정 소식

정보공개

분야별 정보

시정 소식

안동 소식

- 고시/공고
- 입법 예고
- 입법정보(일반)
- 공직사합
- 입법정보(상하수도)
- 감사 결과
- 계약정보 공개시스템
- 계약정보공개시스템(상하수도물 불회계)
- 분묘개장 공고
- 유관기관 공지/소식
- 타 자치단체 소식

행사 알림

시정 홍보

카드뉴스

전자간행물 자료실

영상 갤러리

법무행정정보

전체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추정)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고시공고구분	안동시 공고 제2025-1448호	31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5-1448호	등록일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공고 제2025-1448호	2025-06-23

담당부서	지방시대정책실	연락처
담당부서	지방시대정책실	054-840-6706

첨부파일

공고문 hwp

주민의견 제출서식 hwp

환경영향평가서(초안)요약서 pdf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코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임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초안)요약서 1부.

3. 주민의견 제출서식 1부. 끝.

(그림 2.1-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문 (안동시)

평가서 초안 공람

환경영향평가

■ 사업개요

사업명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사업시행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업구분	도시의 개발
사업구분에 대한 근거법령	도시개발사업 또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25만㎡ 이상)
사업지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통천면 (운곡길 173-7) 도량리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승인기관	경상북도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서	▪ (초안) 00000 표지 및 목차.pdf ▪ (초안) 01000 요약문.pdf ▪ (초안) 02000 사업의 개요.pdf ▪ (초안) 03000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pdf ▪ (초안) 04000 지역개발.pdf ▪ (초안) 05000 평가항목범위등의 심의결과.pdf ▪ (초안) 06000 대안설정 및 평가.pdf ▪ (초안) 07000 환경보전목표의 설정.pdf ▪ (초안) 08110 동식물상.pdf ▪ (초안) 08120 자연환경자산.pdf ▪ (초안) 08210 기상.pdf ▪ (초안) 08220 대기질.pdf ▪ (초안) 08230 악취.pdf ▪ (초안) 08240 온실가스.pdf ▪ (초안) 08310 수질.pdf ▪ (초안) 08320 수리수문.pdf ▪ (초안) 08410 토지이용.pdf ▪ (초안) 08420 토양.pdf ▪ (초안) 08430 지형지질.pdf ▪ (초안) 08510 친환경적 자원순환.pdf ▪ (초안) 08520 소음진동.pdf ▪ (초안) 08530 위락경관.pdf ▪ (초안) 08540 위생공중보건.pdf ▪ (초안) 08550 전파장해.pdf ▪ (초안) 08560 일조장해.pdf ▪ (초안) 08610 인구 및 주거.pdf ▪ (초안) 08620 산업.pdf ▪ (초안) 09000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총괄).pdf ▪ (초안) 10000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pdf ▪ (초안) 1100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pdf ▪ (초안) 12000 종합평가 및 결론.pdf ▪ (초안) 1300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여부.pdf ▪ (초안) 14000 부록(지용량).pdf	
초안 공고일	2025.06.13	
초안 공람 기간	2025.06.13 ~ 2025.07.18	
공람 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 도청신도시사업단, 안동시 지방시대정책실, 통천면 행정복지센터, 예천군 도시과, 호명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설명회 장소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강당	
설명회 일시	2025년 7월 3일(목) 14시	
의견 제출 기한	2025.06.13 ~ 2025.07.29	
부서명	경상북도개발공사 도청신도시사업단	
전화번호	054-650-3301	
비고		

(그림 2.1-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주요 경제 지표

코스피지수	3021.84	▲127.22
코스닥지수	791.53	▲22.67
외국환율(100원)	0.025	▲0.000
환율(1달러)	1365.60	▲4.00

Today News

E-9 비자 외국인 입국 줄어 ▶9면

도시문제 풀이할 스트리트업 ▶9면

가이 '글로벌 히트' 비틀 ▶10면

가솔린 구조조정 의회와 일터 ▶13면

진을 갖춘 '3대 특검' ▶20면

Today keyword

#주식 총동원 '1조 원' 2500억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장 전체 '1조 원'에 달하는 총동원 2500억이 쏟아져 나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코스피는 3021.84포인트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보다 127.22포인트 상승한 3021.84포인트를 기록하며 2500억의 상승세를 보였다.

#'구명부' 발발기 인사 80여명
자녀에 탄핵 정국 관련 의혹에 얽힌 공판기판 주요 인사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84명은 최소 1년 이상 징역을 보았으며, 일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의혹에 얽힌 공판기판 4월 14일 이후에도 23명 사법당국에

#대형마트 '개편' 발발기 충격
자녀가 개편 1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면서 대형마트들이 개편 인상을 '총력' 방에 나서, 남쪽인사가 10~20% 올랐던 마트를 줄여 소비자 가격을 한달 30~4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는 30~40% 올린 가격에 소비자 가격을 한달 30~4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마트는 30~40% 올린 가격에 소비자 가격을 한달 30~40%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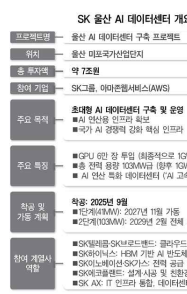
“AI에 기업 생존 달려”... 데이터·전력·반도체 ‘삼각편대’

SK그룹, AI 경영 라벨링

‘인프라 패키지’로 AWS 투자 유치
SKT·하이닉스 등 계열사 총출동
2030년까지 AI·반도체 82조 투자

“AI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속가능성 생존이 달려 있다. 전 세계 AI·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여 혁신을 확장하고 있다.” SK그룹이 AI·반도체·전력·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삼각편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AI·반도체·전력·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삼각편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AI·반도체·전력·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삼각편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삼각편대’ 전략이 AI·반도체·전력·데이터
전문가들은 ‘데이터’ 전략 ‘반도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그룹 계열사 역량을 통합한 이른바 ‘AI 인프라 패키지’ 전략이 AWS를 기반으로 한 AI·반도체·전력·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삼각편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제2 차세대 반도체 SK그룹은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SK그룹은 AI·반도체·전력·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삼각편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AI·반도체·전력·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삼각편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 SK그룹은 AI·반도체·전력·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삼각편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AI·반도체·전력·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삼각편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SK그룹은 AI·반도체·전력·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삼각편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되살아난 영끌·빚투... 5대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 10개월만에 최대

물불은 집값에 증시도 고공행진
하루 2000억 ↑... 이달 6조 늘 듯

5대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1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집값 상승 기대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코스닥지수가 3000안까지 넘어가면서 신용대출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제부터 다음 달 기준금리 결정에 앞둔 5대은행의 고공행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을 연인 총액은 오는 23일 국내 은행들이 연인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논의한다.

신용대출은 10.5조에서 11.5조로 1조 증가했다. 이 중 하루 평균 증가액이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대출은 10.5조에서 11.5조로 1조 증가했다. 이 중 하루 평균 증가액이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은 이미 4월 초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NH농협은행은 20일 현재 다른 은행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가장 높았다. NH농협은행은 20일 현재 다른 은행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가장 높았다. NH농협은행은 20일 현재 다른 은행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가장 높았다.

실질적인 운영을 책임진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부지 확보와 자산 집중 전략을 통해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도약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부지 확보와 자산 집중 전략을 통해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도약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부지 확보와 자산 집중 전략을 통해 국내 최대 데이터센터 사업자로 도약하고 있다.

안동시 공고 제2025-148호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 사업규모: 900,196㎡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
○ 사업시행자: 경상북도개발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25년 6월 23일 ~ 2025년 7월 18일 (20일 이상)
○ 공람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 도청신도시사업단, 안동시 지방자치행정과, 풍천면 행정복지센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2025년 7월 3일(월) 14시
○ 장 소: 예천군 북평면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강당 (정확 예천군 호명읍 4040)

4.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공람시작일부터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2025년 7월 29일까지)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go.kr) 주민의견 등록

5. 기타

○ 기타 공람대상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301), 안동시 지방자치행정과(☎054-640-6700) 문의

2025년 6월 23일
안동시장

예천군 공고 제2025-920호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 위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 사업규모: 900,196㎡
○ 사업기간: 2024년 ~ 2027년
○ 사업시행자: 경상북도개발공사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2025년 6월 23일 ~ 2025년 7월 18일 (20일 이상)
○ 공람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 도청신도시사업단, 예천군 도시과, 호명읍 북평면커뮤니티센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2025년 7월 3일(월) 14시
○ 장 소: 예천군 북평면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강당 (정확 예천군 호명읍 4040)

4.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공람시작일부터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2025년 7월 29일까지)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https://www.eia.go.kr) 주민의견 등록

5. 기타

○ 기타 공람대상 사항은 경상북도개발공사(☎054-650-3301), 예천군 도시과(☎054-650-8975) 문의

2025년 6월 23일
예천군수

청도 농업 새 미래 ‘농업대전환’ 발대식

경도군은 농업의 혁신을 위한 대전환에 나섰다. 군은 지난 11일 각북면 금천리 일원에서 청도 농업대전환 발대식을 개최하고, 농업의 혁신과 새로운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각북면 금천리 일원서 개최... 농업 혁신·새 공동체 조성 목표 확산 사업추진 현황 보고·드론 퍼포먼스·농기계 시연·새마을 나눔 등

지를 함께 다졌다.

청도군은 2024년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각북면 일원 80ha 규모의 혁신농업단지를 조성했다. ‘혁신농업단지’는 마을 단위 농지를 규모화하고, 법인이 공동농업을 책임경영하며 참여농가가 주주로서 수익을 배당받는 구조로 운영된다.

현재 30호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친환경 벼·콩 이모작과 옥수수·양파·마늘 등 복합작목 체계를 도입해 농가 소득을 1.6배, 소득은 1.5배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수익은 평당 1,500원 기준으로 연별에 기본 배당금이 지급되며, 영농활동에 참여할 경우 인건비 외에도 매출 실적에 따른 추가 배당이 제공된다.

박기열 발간대표는 “현재 농업인들이 본래에 성취할 수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농부들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열쇠이며,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농민은 오지 않는다”며 “각각의 농민들이 청도 지역에 있어 맞춤형 혁신농업단지를 조성해, 농민이 소득을 극대화하고 청년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최희문 기자 cmh@nabim.com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영덕블루로드에서 열릴 아이더 하이커스데이에 앞서 열린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 아이더 하이커스데이 사전 행사 성료

9월 영덕 블루로드서 개최 국내 첫 장거리 하이킹 축제 행사 구간 점검·콘텐츠 제작

K2코리야(대표 정영호)의 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개최한 ‘아이더 하이커스데이’에 참가한 참가자를 본 행사와 참가자 모집을 위한 콘텐츠 제작하기 위해 아이더 관계자, 자원봉사자, 블루로드길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강구 해바라길공원을 출발해 반박길 금곡 2리까지 52여 km에 이르는 구간을 답사했으며 8개 코스에 이르는 영덕 블루로드 66.5km 중 코스인 반박길의 언덕(mountain)부터 코스 블루엔딩(blue ending)까지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대형 산불 피

해하고 건강한 아웃도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내 대표 하이킹 페스티벌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전 행사는 본 행사와 관련한 구간을 점검하고 행사 홍보와 참가자 모집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아이더 관계자, 자원봉사자, 블루로드길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강구 해바라길공원을 출발해 반박길 금곡 2리까지 52여 km에 이르는 구간을 답사했으며 8개 코스에 이르는 영덕 블루로드 66.5km 중 코스인 반박길의 언덕(mountain)부터 코스 블루엔딩(blue ending)까지에 해당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대형 산불 피

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덕군을 응원하기 위해 애초 예정된 일정보다 앞당겨 진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 간 열리는 아이더 하이커스데이의 본 행사에는 300명 이상의 하이커들과 16명의 자원봉사자, 세미가 참가하는 행사로 참가자를 걷는 만큼 체력이나 하이킹 스킬을 고려해 2박3일 코스와 3박4일 코스로 나누어 진행했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김영호 기자 ygh@nabim.com

경산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위촉장 수여·위원회 임원 선출 올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경산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시민 참여 예산의 예산 편성 강화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영민 시장을 비롯해 주민참여예산위원, 관계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첫 임기가 시작되는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장 수여, 위원회 임원 선출, 25년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을 진행했다.

위촉된 40명의 위원들은 읍면동 지역회의·전문가·청년 및 공개모집으로 구성돼 2년간 기획조정, 행정지원, 경제발전, 복지문화, 건강안전, 청년 등 6개 분과위원회에 소속돼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 주요역할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의 현장점검(모니터링)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개선방안 모색, 참여예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또는 사업실행을 담당하게 된다.

37개에 이르는 위원들로는 재산관리·백성당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주민이 필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민 시장은 “시민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을 대표로 경산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들이 시장에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총 116건을 심의해 63건을 채택, 28억 5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한편, 경산시는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공모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제4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시민의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의 현장점검(모니터링)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와 개선방안 모색, 참여예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 또는 사업실행을 담당하게 된다.

최희문 기자 cmh@nabim.com

영천시, 내일 한방신활력플러스 플리마켓

경북 10개 지역 액션그룹 45개팀 지역 특색 살린 다양한 상품 선보

영천시 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은 오는 14일 한방신활력플러스센터(한방로 10)에서 플리마켓 ‘한방에 놀자’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경북 10개 지역의 액션그룹 45개팀이 참여해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가인서 기자 gsi@nabim.com

한울원전 ‘한울다누리컬처데이’ 해설이 있는 발레 공연

한울원전자력본부(본부장 이세훈, 이하 한울본부)는 오는 25일 오후 7시 한울에너지빌 대강당에서 제3회 ‘한울다누리컬처데이’ 해설이 있는 발레 Fantasia Moves를 개최한다.

Fantasia Moves는 서울발레사(대표 이은혜)의 공연을 통해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발레의 여정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공연은 올린군민과 관람할 수 있는 사전예매 200석, 선착순 현장석이 100석이다. 사전 예매권에는 한울본부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hnlh)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내용은 한울본부 홍보보에 문의하면 된다.

김희정 기자 hji@nabim.com



“축하하고 싶은날
특별한 기쁨을 축하꽃으로 마음을 전하세요~”

한솔꽃화원

생화 · 꽃바구니 · 난 · 관엽
조화환 · 원예자재 · 분갈이

포항시 남구 상도로 46-1(상도동)
T. 054-281-8001 F. 054-281-1127 M. 010-9429-0014

농협 717106-02-043696 (예금주: 최재현)

근영화사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상황과 위험에 처할 때가 있다.

특히 요즘 경제 위기와 금융 불안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족원에게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이런 불안감은 해소하기 위해 역학이나 운명적 자원의 관심을 갖게 된다.

영화사 보살은 신성한 경종들을 보이며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신령을 차기 위해선 영소에 신의 뜻을 제대로 해석해 인간에게 전달하는 일이므로 아무에게나 그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다년간 25만명의 손님 가정에 생물을 기원합니다.

담당한 일 공갈한 일 가슴속에 담겨져 있고 1대1 상담으로 당신의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하세요.

★주요예언 방송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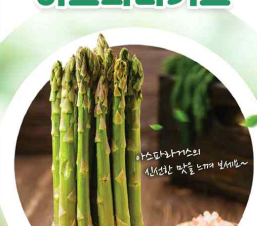
- ▶ 스토리엔 미술연과 100인의 여자 출연
- ▶ 18대 대선 당선자 예언
- ▶ 삼동백화점 분고 / KAL기 광 추락 예언

★점(영)으로 보는 집★

- ▶ 예맥문화 (010-8957-4765) (영화사점) 팀이다
- ▶ 상점은 14시 사전예매권 발기로 합니다.
- ▶ 주 소 / 경상북도 영덕군 영내면 괴리3리 26

다만

친환경으로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 효능

아스파라거스는 수확후 2~3일간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보관 시 상온에 비해 수분 손실이 적고, 맛과 향이 살아있습니다. 또한, 아스파라거스는 수확후 2~3일간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보관 시 상온에 비해 수분 손실이 적고, 맛과 향이 살아있습니다.

TEL. 010-8858-8325, 017-534-7951 김 현 숙

해석고 공고 제2025-0008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에 대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3일

예 천 군 수

1. 사 업 개요

- 사 업 명 :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 위 치 : 경상북도 영천시 봉곡면 신촌리 200-1 호영동 호영동 일원
- 사업규모 : 600,196.8㎡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사업주체 : 경상북도청신도시건설사업추진단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5년 6월 13일 ~ 2025년 7월 10일 (20일 이상)
- 공람장소 : 경상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추진단 도청신도시사업과, 해안군 도시과, 환경과, 생활안전과, 토지관리과 등
-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25년 7월 30일(월) 14시
- 장 소 : 해안군 봉곡면 신촌리 200-1 호영동 호영동 일원 (영덕군 호영동 400)

3. 주민설명회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사전설명회)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2025년 7월 30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www.kas.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

4. 의견제출 및 방법

- 제출기간 : 공람(사전설명회)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2025년 7월 30일까지)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 후 제출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www.kas.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

5. 기타

- 기타 공람(사전설명회)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2025년 7월 30일까지)
- ※ 공람(사전설명회) 공람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2025년 7월 30일까지)에 한하여 「www.kas.go.kr」에 온라인으로 제출
- ※ 상시공개 30일(사전설명회) 공람기간, 상시공개, 고충민원처리, 제재사항평가 등

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표 2.1-2〉 주민설명회 장소 및 일시

일 시	○ 2025. 07. 03(목) 14:00
장 소	○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4층 다목적강당
참석자	○ 20명(참석자 명부 : 12명)



(그림 2.1-5) 주민설명회 개최사진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사 업 명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위 치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및 예천군 호명읍 일원	
설 명 회 일 시		2025년 7월 3일(목) (14:00)	선 명 회 장소	설 명 회 일 시		2025년 7월 3일(목) (14:00)	선 명 회 장소
사 업 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사 업 자		경상북도개발공사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	연 번	성 명	주 소	서 명
1	이	예천군 호명읍	✓	1	이	호명읍	✓
2	김	예천군 호명읍	✓	2	김	호명읍	✓
3	김	예천군 호명읍	✓	3	김	호명읍	✓
4	김	예천군 호명읍	✓	4	이	호명읍	✓
5	이	예천군 호명읍	✓	5	이	호명읍	✓
6	이	예천군 호명읍	✓				
7	이	예천군 호명읍	✓				
8	이	예천군 호명읍	✓				
9	이	예천군 호명읍	✓				
10	이	예천군 호명읍	✓				
11	이	예천군 호명읍	✓				
12	이	예천군 호명읍	✓				
13	이	예천군 호명읍	✓				
14	이	예천군 호명읍	✓				
15	이	예천군 호명읍	✓				
16	이	예천군 호명읍	✓				
17	이	예천군 호명읍	✓				
18	이	예천군 호명읍	✓				
19	이	예천군 호명읍	✓				
20	이	예천군 호명읍	✓				

(그림 2.1-6)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 참석명부

2.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함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 주민의견 제출서

- 경상북도개발공사, 안동시, 예천군 등 공람장소에 제출된 의견 없음

(2)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의견 없음

EIASS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국민참여

평가서 초안 공람

환경영향평가

■ 사업개요

사업명	대령해수욕장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사업시행자	산안군
사업구분	관광단지의 개발
사업구분에 대한 근거법령	관광사업(30만㎡ 이상)
사업지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대령해수욕장길 188) 광산리 대령해수욕장 일원(임자면 광산리 407-22번지)
승인기관	전라남도

초안공람

주민의견수렴

*검색결과: 0건

번호	사업명	의견제출자	첨부파일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주민의견등록

목록

(그림 2.2-1)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주민의견 수렴결과

(3) 의견수렴 결과

(가) 주민설명회 현장의견

평가 항목	구분	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악취	참석자1	오수중계펌프장에 악취저감시설 설치계획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 관련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였거나 협의계획이 있는지 궁금함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환경청 협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며 경상북도, 안동시, 예천군 환경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중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반영
온실가스	참석자1	- 요약본에는 온실가스 부분이 나와 있는데 설명회 발표자료에 빠져 있는데 왜 그런지 궁금함 - 공사차량의 공회전 최소화 여부를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궁금함	- 오늘 설명회는 평가서에서 제시된 항목 중 주요 평가항목을 선정함에 따라, 본 발표자료에는 생략하였음 - 공회전 금지에 의한 CO₂ 저감률은 굴삭기, 로더의 경우 4.2%, 덤프트럭, 불도저의 경우 7.0% 저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사차량에 대한 공회전 최소화는 공사인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이를 공사시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에 포함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임	반영 반영
악취	참석자2	- 오수중계펌프장 위치는 어디인지 - 오수중계펌프장의 경우, 악취 등의 민원이 많아 탈취시설 설치 뿐만 아니라 밀폐하는 등 악취 유출방지에 신경써줬으면 좋겠음	- 산업 6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도에 위치가 표시됨 - 악취에 대한 처리효율이 우수한 약액세정식 탈취기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오수중계펌프장 운영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취 영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중계펌프장 인근 악취 사후환경 영향조사지점을 계획하였음	반영 반영
전파장해	참석자2	- KT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전파에 의한 영향에 대한 검토가 되었는지 - 데이터센터가 들어오면서 당초 계획했던 2단계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데이터가 있는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전파장해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서에 제시하였음 -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적합성 기준(EMC) 테스트, 전파환경 검토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 및 운영기준도 엄격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데이터센터에 의한 전파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또한, 일상 생활환경에서의 전자계는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상태임	반영
대기질	참석자2	대기질 예측시 PM-10 등의 기준치 초과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공사시 예측결과, AP-4(금능리 141-1)지점에서 PM-2.5 대기환경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저감방안 후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였음. 추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음	반영

평가 항목	구분	의견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비 고
수질	참석자2	- 가배수로, 침사지 등 설치한다고 하지만 강우가 심할 때, 쌓이는 우수에 상등수만 흘러보내는게 아니라 그냥 방류하는 등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도 우려됨. 1, 2단계 공사시 주민들의 민원이 사례를 비추어보아 공사시 구체적인 저감방안 제시가 필요함 1단계 준공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파손 및 기능저하가 관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발공사 차원의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공사시 우수 및 토사유출량 등을 예측하여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의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였으며, 폭우시 사업지구 내 공사구간으로 우수 유입을 방지하고 외부로 우회시켜 우수의 집중을 방지할 계획임. 또한,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 하겠음 - 향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 방법을 강구하겠음	반영
				반영
소음·진동	참석자2	주민들의 소음·진동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공사차량의 저속운행에 대한 실제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함	공사차량 저속운행을 위하여 속도 제한 안내판 설치, 차량운전자의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소음·진동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친환경적 자원순환	참석자2	폐기물 거점 수거장소를 계획에 담아서 폐기물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조치 바람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입주업체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관리 계획 수립·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추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주업체 선정시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겠음(2단계 부지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중임)	반영
기타	참석자2	산업단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 자전거 스테이션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도시지원시설 용지(산업시설, R&D)내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 자전거 station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상세한 위치 및 제원 등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추후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겠음 - 전기자전거 station의 경우,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에서 진행중이며, 추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음 -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할 계획임	반영

(나) 대구지방환경청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대구지방 환경청	I.총괄 ○ 본 건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및 안동시 풍천면 일원을 대상으로 면적 900,196.8㎡ 규모의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3단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임.	-	-
	○ 본 평가서(초안)는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며, 본안 제출 시 관계기관,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과 그 반영결과에 대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미반영 의견에 대하여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였음.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계 기관 및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및 반영결과를 제시하겠음	반영
	- 협의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작성(도면, 표 등)하여 제시	- 협의의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사항 발생시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도면, 표 등으로 제시하겠음	반영
	- 관계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수렴·검토하고, 각 항목별 예측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및 반영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관계행정기관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수렴·검토하였으며, 항목별 예측결과에 따른 저감방안 및 반영내용 등을 제시하겠음	반영
	I.세부 검토의견 1) 대안의 설정 ○ 금회 대안 종류를 1개로 설정하여 제시한바 (평가서 127쪽),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25.4)」에 따라 대안은 3개 이상을 설정하고 대안 종류 별로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성안을 작성·제시하여야 함.	○ 금회 3단계 사업지구를 포함하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전체 면적에 대하여 최초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여건, 자문위원단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였음. 초안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추가 설정·제시하겠음	반영
	2) 자연생태환경 분야(동·식물상) ○ 현지조사 시 사업대상지 내 법정보호종 수리부엉이가 발견된바(평가서 237쪽), 발견된 위치는 금회 토지이용계획상 근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람 활동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이 우려되므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서식공간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한 후 해당 지역을 원형보전녹지로 설정하여 서식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함.	○ 수리부엉이는 수변이 인접한 암벽지대나 바위산을 선호하나 현지조사시 확인된 지역은 암반, 바위가 분포하지 않는 구릉성 산지로 서식 가능성은 낮음. 또한, 동계조사시 발견 위치는 토지이용계획상 삼림 등의 훼손이 없는 보전형 근린공원으로 수리부엉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동계조사시 관찰된 개체는 먹이활동을 위해 일시적인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 하고, 서식지 발견시 좌향의 의견에 따라 원형 보전지 설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음	반영
	3) 대기환경 분야(대기질, 악취) ○ 공사 시 대기질 영향예측 결과 주변 정온 시설에서 PM-2.5 항목이 환경기준을 초과 하는 것으로 제시된바(평가서 391~392쪽),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경북도청신도시 건설 사업(2단계)가 현재 공사중에 있어 대기질 누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화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강화된 비산먼지 저감방안 등을 다음과 같이 수립·제시하였음	반영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대규모 환경청	- 공사구역별 구체적인 비산먼지 저감방안 마련	- 공사구역별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 성토구간 : 성토면 방진덮개 처리 등 · 절토구간 : 살수기 등을 이용한 수분공급 등 · 차량이동구간 : 차속제한, 임시포장 등	반영
	- 정온시설이 인접한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대한 추가 저감방안 마련	- 정온시설 인근 도시지원시설용지 토공사시 살수 횟수 추가, 공사차량 운행속도 제한(5~10km) 등의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반영
	- 인근 주거시설의 위치 및 공사차량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세륜세차시설 위치 설정, 겨울철 동파 시 적용 가능한 방안 마련	- 인근 주거시설 위치, 공사차량 이동동선 등을 고려하여 세륜·세차시설 위치를 설정 하였으며, 동절기시(결빙방지대책, 운영시간 조정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반영
	- 나대지 노출 구간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 나대지 노출 구간은 방진덮개 설치, 살수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겠음	반영
	- 사업대상지 주변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침적된 먼지 관리 방안 마련	-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이행하여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먼지의 침적을 최소화하고, 이동동선에 주기적인 청소 시행으로 침적된 먼지를 처리하여 이차적인 재비산을 방지토록 하겠음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좌항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입주제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바(평가서 41~44쪽),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제시 * 입주제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1~3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입주제한시설 관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운영시 대기질, 악취 등의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입주제한 확인사항을 추가하여 수립·제시하겠음	반영
	4) 온실가스 분야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좌항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사업지구 내 R&D 시설 상부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바(평가서 492~493쪽), 신재생에너지 도입 여부 및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제시	- 운영시 온실가스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태양광발전시설 운영여부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추가하여 수립·제시하겠음	반영
	5) 수환경(수질) 분야 ○ 운영 시 용수공급을 위한 용상3정수장을 신설하여 공급할 계획인바(평가서 531쪽),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용수공급 가능 시기를 명확히 하고, 필요시 임시 공급 방안을 마련·제시하여야 함.	○ 운영시 용수공급은 급수구역 도청신도시 단계별 목표인구로 산정되었으며, 안동시 상수도과와 사전협의를 한 용수공급 계획을 제시하겠음	반영
	-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검토 하여 용상3정수장 신설 일정허가 현황 등 제시	- 『안동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2021년』에 부족분 발생시 용상3정수장을 신설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안동시 상수도과와 사전협의를 한 용상3정수장 신설 상세계획을 제시하겠음	반영
	- 공급량 부족 시 대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공문 등 관련 자료 제시	- 관계기관과 협의한 용수 공급량 및 신설 계획 등을 제시하겠음	반영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대규모 환경청	○ 운영 시 오·폐수는 풍천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할 계획인바(평가서 531쪽), 하수도 정보시스템 2023년 통계상 해당시설의 처리 용량 및 여유용량을 고려했을때 도청신도시 1,2,3단계의 오·폐수유입에 따른 처리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계처리 가능성 등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운영시 오·폐수는 풍천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할 계획임. 또한, 도청신도시 1,2,3단계의 총 오·폐수 유입에 따른 처리 여부, 시설용량 및 증설계획 수립여부 등을 안동시 하수도과와 사전협의한 자료 등을 제시하겠음	반영
	- 풍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용량 및 여유용량 제시	- 풍천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 9,000㎥/일 - 2025년 연평균 유입량 : 7,599㎥/일 (가동율 84.4%) - 여유량 : 1,401㎥/일	반영
	- 여유용량 부족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등 상위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증설 계획 수립여부 제시	- 풍천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만족 · 오폐수량 : 1,094.8㎥/일(초안기준)	반영
	-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연계처리 가능 여부 확인 및 불가능할 경우 오·폐수처리 계획 수립·제시	- 사업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연계처리가 가능 여부, 시설용량 증설계획 등을 제시하겠음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좌항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도시지원시설용지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시설은 입주를 제한하고 있으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를 허용할 계획인바(평가서 42쪽),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환경영향 조사 계획을 수립·제시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주 여부를 확인하고 입주 시 적절한 위탁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에 포함	-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폐수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시 수질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추가하여 수립·제시 하겠음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입주 여부 확인하고, 입주시 적절한 위탁처리 여부 확인을 조사내용에 포함	반영
	- 침사지, 가배수로 등 토사유출저감시설에 대해서는 강우 시 적정 운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주기를 월 1회로 강화	- 토사유출저감시설에 대하여 강우시(6~8월) 월 1회로 운영 상태를 확인하도록 공사시 조사주기를 강화하겠음	반영
	- 임시침사지(AI)는 기존 농업용수로로 통해 방류할 계획이므로,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기존 용수로의 퇴적 및 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시 임시 침사지 하류 농업용수로 기능유지 여부 확인포함	- 공사시 임시침사지(AI)의 하류 농업용수로 기능유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시 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에 포함하겠음	반영
	○ 도시지원시설용지 인근 지역에 대한 잠재적인 지하수 영향이 우려되므로, 주변 지하수 이용 시설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오염 발생 시를 대비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사전에 수립·제시하여야 함.	○ 도시지원시설용지 인근 지하수 이용 시설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발생을 대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겠음	반영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대규모 환경청	- 인접 지역(산업시설 서측)의 지하수 이용 시설(용도 및 음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관정 관리 목록 작성	- 산업시설 서측의 지하수 이용시설 현황(용도 및 음용 여부 등)을 파악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하수 관정 목록 제시하겠음	반영
	- 지하수 오염에 민감한 시설(음용 및 생활용 관정 등)이 존재하는 경우, 오염 또는 민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관리대책(예: 정기점검, 대체 심정 개발, 대체 수원 공급 등)을 마련	- 산업시설 서측 지하수 오염에 민감한 시설이 분포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공사시 및 운영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확인될 경우 관리대책을 마련하겠음	반영
	- 오·폐수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 관리 계획 마련	- 오·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관로를 통하여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지하수로 유입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며, 지하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	반영
	6) 토지환경 분야(토양, 지형·지질) ○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옥도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시 발생하는 비옥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비옥도 발생(채취 가능) 지역, 비옥도 재활용 가능지역(공원, 녹지, 화단 등), 비옥도 적치장 조성 및 활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립하고 도면으로 제시	- 비옥도 발생지역, 비옥도 재활용 지역, 비옥도 적치장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위치 등은 도면으로 제시)	반영
	- 비옥도 사용가능·필요 지역(공원, 녹지, 화단 등)을 도면으로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면적 및 토심을 고려한 비옥도 재활용 필요량 산정	- 비옥도 발생지역 및 재활용지역을 도면상에 제시하고, 현지여건(분포심도, 토양회수율 등)을 고려하여 비옥도량을 산정하겠음	반영
	- 비옥도 채취량, 적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비옥도 적치장 면적을 산정하고, 공사 중 적치장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도면으로 제시	- 공사시 비옥도 적치장 위치를 도면상에 제시하고, 채취량 및 적치 높이 등을 고려한 비옥도 적치장 면적을 산정하겠음	반영
	- 채취 가능량의 전량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 비옥도 필요 지역에 공급하는 등 기타 재활용을 제고 방안을 고려	- 채취한 비옥도는 사업지구 내 공원 및 녹지 등에 전량 재활용할 계획임	반영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좌항의 내용 등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비옥도 채취량, 적치장 반입량·반출량, 보관량, 기간, 재활용된 비옥도량, 복토 재료의 활용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지 및 사진 등)	- 비옥도 채취량 및 재활용량(활용상태 포함), 적치장 보관량(반입·반출량) 및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비옥도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공사시 지형·지질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관리대장 점검내용을 추가하겠음	반영
	- 비옥도 적치장의 상부 피복 상태, 가배수로 설치 등 조성 및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	- 비옥도 관리대장에 적치장 상부 피복 상태, 가배수로 조성 및 관리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관리하겠음	반영
	7) 생활환경 분야(소음·진동) ○ 도로교통소음 영향예측 시 주변 정온시설 중 보육시설에 대해 기준을 65dB(A)로 설정하고 있으나, 아동 보호를 위하여 55dB(A)로 강화하여 검토·제시하여야 함.	○ 예측시 포함된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로 분류되며, 교육시설에 미해당되어 65dB(A)로 기준을 설정함. 급회 의견을 반영하여 강화된 기준인 55dB(A)로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겠음	반영
	○ 도로교통소음 영향예측 시 3차원 소음예측을 통해 지형, 건축물 형상, 방음벽 형태 등 제반 여건이 포함된 예측을 재실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끝.	○ 운영시 도로교통소음 영향예측시 제반여건(지형, 건축물 등)이 포함된 3차원 소음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다) 경상북도 기후환경정책과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경상북도 기후환경 정책과	☐ 총 관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시 반영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제시하겠으며, 본 사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반영
	○ 본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책을 강구한 후 공사를 시행할 것	○ 본 사업시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 등을 이행하고, 민원 발생시 지역주민과 원만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하겠음	반영
	○ 아울러, 공사 시 및 운영 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환경분야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환경분야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음	반영
	☐ 항목별 검토의견 [자연생태환경 분야] ○ 사업 시행 전 사업지구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지구 외 지역에서 생태계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시행 전 사업지구 경계를 구분하고, 사업지구 외 지역의 생태계 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음	반영
	○ 공사 시 및 운영 시 주변 동식물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평가서(초안)에 제시된 저감방안 준수하여야 함	○ 공사시 및 운영시 주변 동·식물의 서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제시된 저감방안 준수하겠음	반영
	○ 문헌 및 현지조사 결과 수달, 삵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확인되었으므로 각 법정보호종의 현황(행동권, 이동경로 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법정보호종의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등을 통한 저감방안을 제시하고,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생태계 영향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법정보호종 등 출현 시 행동요령 등이 제시된 대응 매뉴얼을 작성·비치하고 공사 전 공사관계자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	- 법정보호종 출현시 대응 매뉴얼 등을 작성·제시하였으며, 협의내용 관리대장에 본 내용을 추가하여 공사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음	반영
	-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법적 보호종이 추가로 확인될 시 개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공사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며, 법적보호종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에는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보호대책을 계획·이행하겠음	반영
	○ 가배수로 설치 시 소형 야생생물 이동을 위한 배수로 내 탈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형동물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최대 20m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할 것	○ 가배수로는 공사시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이며, 추후 운영시 배수로 등 설치시 현장여건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소형 야생생물 탈출시설을 설치하겠음	반영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경상북도 기후환경 정책과	○ 훼손 예상 수목 중 임상이 양호한 수목과 이식이 용이한 수목은 최대한 많이 사업 지역 내 이식하고 해당 수목 외 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한 조경용 수목 선정 시 외래 식물을 자제하고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내 자생종을 고려할 것	○ 훼손수목 중 임상이 양호한 수목과 이식이 용이한 수목은 최대한 사업지역 내 이식하고 해당 수목 외 공원 및 녹지조성을 위한 조경용 수목 선정 시 외래 식물을 자제하고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국내 자생종(소나무, 전나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겠음	반영
	○ 사업지구 내 생태계교란생물은 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관리하여야 하며, 토공사 등으로 식생이 훼손된 지역에는 생태계교란식물이 우점종이 되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발견하는 즉시 우선 제거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생태계교란생물은 보고서에 제시한 관리방안을 이행하고, 토공사 등으로 식생 훼손지역은 생태계교란식물이 우점종이 되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으므로 관리방안을 토대로 제거작업을 실시하여 주변 생태계로 확산을 방지할 계획임	반영
	○ 사업지구 내 시설물로부터 발생하는 야간 불빛은 사업지구 및 인접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동식물 서식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예측하고 실효성 있는 야간 조명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 - 건물의 불빛이 외부로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물을 배치 - 조명운영시간 제한, 동작감지 조명, 자외선 제거 필터 활용 등	○ 사업지구 내 야간 조명으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예측하고, 야간조명으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야간 조명 저감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반영
	[대기환경 분야]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절전형 전등 설치, 에너지 고효율 전기장비 설치, 고효율 단열 건축자재 사용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 계획과 친환경 건축시스템을 도입할 것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도입, 고효율에너지 이용설비 도입 계획(LED 가로등, 고효율 가스보일러, 조도 자동조절조명기구 등)을 수립·제시하겠음	반영
	○ 건설장비, 차량 운행 및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법에 따른 저감 방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건설장비, 차량 운행 및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법에 따른 저감 방안을 준수하겠음	반영
	- 진흙입로 세륜시설 설치, 공사장 내 주기적 살수, 차량 공회전 최소화, 방진벽 설치, 모래야적 및 사면 덮개 설치 철저, 운반 차량 덮개 설치 등	-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륜·세차시설 운영, 주기적 살수, 차량 공회전 금지 및 덮개설치·운영, 가설방진망 설치, 야적 및 사면 덮개 등을 설치·운영하겠음	반영
	- 공사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소음·진동 대책으로 구간별 차량이동속도 명시, 이동경로에 차량운행 관리원 배치 계획, 이동차량 많을 시 분산 운행 계획 등	- 공사차량 이동경로에 대한 소음·진동 대책으로 차량 속도제한 명시, 차량운행 관리원 배치계획, 이동차량 많을 시 분산 운행 계획 등을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실시하겠음	반영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발생)시 공사시간 단축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 중단, 살수차량 운영 확대 및 살수 강화(자동화) 등	-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발생)시 공사시간 조정, 비산먼지 다량 발생 공정 중단, 살수차량 운영 확대 및 살수 강화 등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하겠음	반영
	[토지·수환경 분야] ○ 절·성토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위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절·성토작업은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시행하고 배수구역 주위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음	반영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경상북도 기후환경 정책과	○ 가배수로·침사지 등의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고, 수시로 관리하여 침사지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의 토사유출방지 시설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한 충분한 용량으로 계획하였으며, 수시로 관리하여 침사지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반영
	○ 발생사면은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면보호공법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발생사면은 주변 경관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적절한 사면보호공법을 수립하겠음	반영
	- 절·성토 작업 후 사면보호공법을 조기시행하여 나지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나지상태의 사면을 방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덮개(비닐, 부직포 등) 설치 등 저감대책 수립	- 사면보호공법을 조기시행하여 나지상태로 방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나지상태의 사면을 방치 할 경우에는 덮개(비닐, 부직포 등) 설치 등을 저감대책 수립하겠음	반영
	○ 예상치 못한 토양오염물질 발견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시 토양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기타 미확인된 토양오염물질 발견시 영향 예측 및 저감대책을 제시하였으며, 공사시 토양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겠음	반영
	[생활환경 분야] ○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설치 전 대상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할 것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사시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운영시 소음예측 결과, 방음벽 설치계획은 없음	반영
	○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 폐기물 등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 토양 및 수질오염이 유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폐유, 건설 폐기물 등은 좌향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 2차오염(토양 및 수질)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적절한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적절한 진·출입로,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등을 운영하여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도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식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색채를 선정·시공 하여야 함	○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원 및 녹지공간 등 확보, 식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건축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 및 색채를 선정·시공하겠음	반영
	[기 타]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할 경우 인허가(실시계획 승인 등) 후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도 기후환경정책과로 통보하여야 함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승인 후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경상북도 기후환경 정책과로 통보하겠음	반영

(라) 안동시 환경관리과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안동시 환경 관리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3단계 환경영향평가 진행 시 사업허가(허가, 인가, 승인, 결정 등) 전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후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본안 작성 시 총량검토서를 작성하여 우리 부서와 재협의 하여야 함 (단, 단위구역 내 지역개발부하량 부족 등 할당 불가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량 할당 불가능). 끝.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3단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대구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추후 협의완료 후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시 수질오염총량 검토서를 작성하여 안동시 환경관리과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반영

(마) 예천군 환경관리과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예천군 환경 관리과	☐ 총 관 본 세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초안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나 부적합 등을 정확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환경에 미칠 추가적인 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현지 실정에 맞는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본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전에 환경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본 검토의견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 이행토록 하겠으며, 초안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나 부적합한 예측 등은 없었음. 여름철 추가 조사를 통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본안에 제시하고 사전에 환경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으며,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정적 등으로 환경분야에 추가적인 악영향 또는 우려되는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반영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주체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보전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민원이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이행완료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 및 운영시 저감방안을 이행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환경보전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겠으며, 민원 발생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마련·이행 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반영
	☐ 수질/오염총량 강우 시 토사유출을 위해 노출사면에 대한 토사유출 저감방안 이행 및 시설물(우수관로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계 전 유출된 토사 처리에 후 인계하여야 함	강우시 토사유출 저감방안 이행하겠으며, 시설물(우수관로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인계 전 유출된 토사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반영
	오수중계 펌프장 악취방지시설과 관련하여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추진하여야 함.	사업지구 내 오수중계 펌프장 악취방지 시설은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토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추진하겠습니다	반영
	☐ 자연생태(동식물) 지형변경 및 훼손이 발생하는 개별사업 추진 시 동·식물상의 변화를 최소화하여 자연성이 보전·회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본 사업시행시 동·식물상의 변화를 최소화 하고, 추후 자연성이 보전·회복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반영
	공사 진행 시 멸종 위기종 및 야생생물 서식지 발견 시 공사를 중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멸종위기종 및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발견시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대책 강구·시행)후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반영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예천군 환경 관리과	☐ 대기(대기질, 온실가스) ○ 공사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저탄소 자재·건설 장비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준수하고, 최대한 저탄소 자재·건설장비 사용토록 권고하겠음.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고효율 에너지 이용설비 도입계획 등으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 악취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4에 제시된 악취 방지시설 중 적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차후 산업단지 조성 후 입주 기업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에 대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산업시설 및 R&D)에는 악취배출시설 입주를 제한함에 따라 차후 입주 기업에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음. 오수중계펌프장은 약액세정식 탈취 기기 등을 설치하여 악취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반영
	☐ 토양(지형·지질) ○ 중장비 사전점검 및 정비로 공사 장비에서 발생 가능한 폐유 및 누유 등에 의해 토양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투입장비는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폐유 및 누유 등을 최소화하여 토양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생활환경(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등 하위법령 및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각 입주업체별 보관시설(또는 보관 장소)의 설치 및 관리 계획 수립·제시하여야 함	○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입주업체 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아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관리계획 수립·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 우며, 추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주업체 선정시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계획 등을 수립하겠음 (2단계 부지도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중임)	반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 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생활폐기물 배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별도의 부지를 마련 및 설치 하여야 함.(설치 전 위치, 디자인 및 규격에 대한 사전 협의 필요)	○ 좌향의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전 위치, 디자인 및 규격에 대하여 예천군 관련 실과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소음·진동 ○ 주거지와 인접한 지역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설방음시설을 적정 설치하는 등 환경민원에 적극 대응하여야 함	○ 공사시 정온시설과 인접한 지역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저감방안(가설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환경민원을 최소화 하겠음	반영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 전까지 특정 공사 사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착공 전 본 사업에 대한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를 제출하겠음	반영
	☐ 경관(일조장해) ○ 사업지구 내 업무시설 건축 시 주변 건축물에 대한 일조영향을 받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임.	○ 일조장해 예상시설은 업무시설 북측으로 경상북도 교육청 어린이집이 위치하나, 10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일조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업무시설 최대 7층 이하)	반영

구 분	검 토 의 건	반 영 여 부 (미반영사유)	비 고
예천군 환경 관리과	☐ 기타(오·폐수처리) ○ 공사 현장사무소 개소 시 발생할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전 해당 관리청에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오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현장사무소 발생 오수를 연계처리 할 경우, 사전에 해당 관리부서에 협의 하여 오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산업단지 및 공원 조성에 따른 전기차 충전시설 및 3단계 부지 내 전기자전거 station 등을 세부계획에 담을 것.	○ 도시지원시설용지(산업시설, R&D)내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자전거 station을 설치할 계획 이며, 현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상세한 위치 및 제원 등의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하여, 추후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겠음 - 전기자전거 station의 경우,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서 진행중이며, 추후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련 계획을 반영토록 하겠음 -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 등에 설치할 계획임	반영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예 천 군



1. 규칙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 총수 : 773명(증 2명)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 내역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비 고
현 행	771	396	16	109	39	211	
개정안	773	402	18	108	41	204	
증 감	+2	+6	+2	-1	+2	△7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정무직·일반직(안 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현 행	724	1	1	4	38	180	217	185	95	3
개정안	725	1	1	4	38	180	217	187	94	3
증 감	+1	-	-	-	-	-	-	+2	△1	-

○ 직종 및 직급별 정원 조정-연구·지도직(안 별표 3)

구 분	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현 행	47	-	12	3	32
개정안	48	-	13	3	32
증 감	+1		+1		

4. 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

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EMPSHIN3266@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0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규칙 제 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25. 12. 31>

예천군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73	402	18	108	41	204
정무직 계		1	1	0	0	0	0
	정무직	1	1	0	0	0	0
일반직 계		724	392	18	74	36	204
일반직	3급 소계	1	1	0	0	0	0
	3급	1	1	0	0	0	0
	4급 소계	4	3	0	1	0	0
	4급	1	1	0	0	0	0
	과학기술4급	1	0	0	1	0	0
	4급·과학기술4급	2	2	0	0	0	0
	5급 소계	38	18	3	2	3	12
	행정	6	5	1	0	0	0
	시설	1	1	0	0	0	0
	행정·사회복지	2	2	0	0	0	0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1	1	0	0	0	0
	행정·시설	4	4	0	0	0	0
	행정·사회복지·농업	2	0	0	0	0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0	0	0	0	1
	행정·농업·녹지	2	1	0	0	0	1
	행정·농업·시설	7	0	2	0	0	5
	행정·농업·수의	1	1	0	0	0	0
	행정·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공업·환경	1	1	0	0	0	0
	행정·공업·농업연구관	1	0	0	0	1	0
	행정·보건·시설	1	1	0	0	0	0
	행정·환경·시설	1	0	0	0	1	0
	행정·시설·방송통신	1	0	0	0	1	0
	행정·농업·보건·시설	1	0	0	0	0	1
	행정·농업·환경·시설	1	0	0	0	0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0	0	1	0	0
	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일반직	6급 소계	180	103	2	13	9	53
	행정	29	23	2	0	4	0
	세무	2	2	0	0	0	0
	사회복지	3	2	0	0	0	1
	농업	3	3	0	0	0	0
	녹지	2	2	0	0	0	0
	보건진료	2	0	0	2	0	0
	환경	3	3	0	0	0	0
	시설	15	12	0	0	1	2
	운전	2	2	0	0	0	0
	행정·세무	3	2	0	0	0	1
	행정·전산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	7	6	0	0	0	1
	행정·공업	2	2	0	0	0	0
	행정·농업	5	3	0	0	0	2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보건	1	0	0	1	0	0
		행정·환경	1	1	0	0	0	0
		행정·시설	9	9	0	0	0	0
		행정·방재안전	1	1	0	0	0	0
		행정·위생	4	3	0	0	1	0
		행정·운전	1	1	0	0	0	0
		행정·학예연구사	1	1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공업·시설	1	1	0	0	0	0
		농업·녹지	1	1	0	0	0	0
		농업·수의	2	2	0	0	0	0
		보건·간호	2	0	0	2	0	0
		공업·환경	2	2	0	0	0	0
		행정·세무·사회복지	2	0	0	0	0	2
		행정·세무·농업	21	2	0	0	0	19
		행정·세무·시설	1	1	0	0	0	0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농업	6	0	0	0	0	6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0	0	0	0
		행정·공업·환경	1	1	0	0	0	0
		행정·공업·방송통신	2	1	0	0	1	0
		행정·농업·녹지	3	1	0	0	0	2
		행정·농업·수의	2	0	0	0	0	2
		행정·농업·시설	8	1	0	0	0	7
		행정·녹지·시설	1	1	0	0	0	0
		행정·보건·간호	1	0	0	1	0	0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0	0	0	0
		보건·간호·의료기술·보건진료	7	0	0	7	0	0
		행정·세무·사회복지·농업	3	0	0	0	0	3
		행정·세무·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사회복지·농업·보건	1	0	0	0	0	1
		행정·사회복지·농업·간호	2	0	0	0	0	2
		공업·기계운영·전기운영	1	1	0	0	0	0
		방호·운전·사무운영	3	1	0	0	1	1
		운전·기계운영·전기운영·사무운영	1	0	0	0	1	0
		기계운영·전기운영	1	1	0	0	0	0
	7급 소계		217	125	5	22	13	52
		행정	47	32	5	0	6	4
		세무	4	4	0	0	0	0
		전산	2	2	0	0	0	0
		사회복지	8	2	0	0	0	6
		공업	2	1	0	0	1	0
		농업	3	3	0	0	0	0
		녹지	1	1	0	0	0	0
		보건	1	1	0	0	0	0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간호	4	0	0	0	0	4
		의료기술	1	0	0	1	0	0
		보건진료	4	0	0	4	0	0
		환경	1	1	0	0	0	0
		시설	22	18	0	0	3	1
		운전	7	7	0	0	0	0
		행정·세무	7	4	0	0	0	3
		행정·전산	2	2	0	0	0	0
		행정·사회복지	19	5	0	0	0	14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9	9	0	0	0	0
		행정·환경	1	0	0	0	0	1
		행정·시설	16	16	0	0	0	0
		행정·방재안전	2	2	0	0	0	0
		행정·위생	3	2	0	0	1	0
		전산·방송통신	2	2	0	0	0	0
		공업·환경	1	1	0	0	0	0
		공업·방송통신	1	1	0	0	0	0
		농업·녹지	2	2	0	0	0	0
		농업·수의	1	1	0	0	0	0
		보건·의료기술	2	1	0	1	0	0
		보건·간호	11	0	0	11	0	0
		간호·보건진료	2	0	0	2	0	0
		환경·시설	1	0	0	0	1	0
		기계운영·전기운영	1	0	0	0	1	0
		행정·세무·농업	14	0	0	0	0	14
		행정·농업·녹지	4	1	0	0	0	3
		행정·농업·수의	2	0	0	0	0	2
		행정·농업·시설	1	1	0	0	0	0
		행정·녹지·시설	1	1	0	0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1	0	0	1	0	0
		환경·운전·전기운영	1	1	0	0	0	0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0	0	1	0	0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8급 소계		187	96	6	26	8	51
		행정	37	27	4	0	2	4
		세무	1	1	0	0	0	0
		사회복지	10	7	0	0	0	3
		공업	3	1	0	0	2	0
		농업	2	2	0	0	0	0
		녹지	1	1	0	0	0	0
		보건	4	1	0	3	0	0
		간호	8	0	0	0	0	8
		보건진료	3	0	0	3	0	0
		환경	3	3	0	0	0	0
		시설	22	13	0	0	2	7
		방송통신	1	0	1	0	0	0
		운전	5	4	1	0	0	0
		시설관리	1	0	0	0	1	0
		기계운영	1	1	0	0	0	0
		행정·세무	6	1	0	0	0	5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행정·전산	4	4	0	0	0	0	
		행정·사회복지	8	2	0	0	0	6	
		행정·공업	1	1	0	0	0	0	
		행정·농업	21	6	0	0	0	15	
		행정·녹지	1	1	0	0	0	0	
		행정·환경	1	0	0	0	0	1	
		행정·시설	7	5	0	0	1	1	
		행정·방재안전	3	3	0	0	0	0	
		행정·방호	1	1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공업·환경	1	1	0	0	0	0	
		공업·시설	2	2	0	0	0	0	
		농업·녹지	3	3	0	0	0	0	
		보건·간호	7	0	0	7	0	0	
		보건·환경	1	1	0	0	0	0	
		간호·보건진료	1	0	0	1	0	0	
		기계운영·화공운영	1	1	0	0	0	0	
		행정·농업·환경	1	0	0	0	0	1	
		행정·환경·운전	2	2	0	0	0	0	
		의료기술·간호	7	0	0	7	0	0	
		보건·간호·의료기술	3	0	0	3	0	0	
		행정·보건·간호·보건진료	2	0	0	2	0	0	
	9급 소계		94	44	2	9	3	36	
		행정	14	5	2	0	2	5	
		사회복지	7	5	0	0	0	2	
		농업	8	5	0	0	0	3	
		보건	2	0	0	2	0	0	
		환경	2	2	0	0	0	0	
		시설	8	3	0	0	0	5	
		방재안전	1	1	0	0	0	0	
		운전	7	5	0	2	0	0	
		행정·세무	15	3	0	0	0	12	
		행정·사회복지	9	2	0	0	0	7	
		행정·농업	1	1	0	0	0	0	
		행정·보건	1	0	0	1	0	0	
		행정·환경	3	2	0	0	0	1	
		행정·시설	6	4	0	0	1	1	
		행정·방재안전	2	2	0	0	0	0	
		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녹지·시설	2	2	0	0	0	0	
		보건·사회복지	1	0	0	1	0	0	
		보건·의료기술	3	0	0	3	0	0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0	0	0	0	
		전문경력관 소계	3	2	0	1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육교관)	1	0	0	1	0	0
			전문경력관 다군(사진·영상촬영)	2	2	0	0	0	0
		별정직	계	0	0	0	0	0	0
			6급 상당(비서)	0	0	0	0	0	0
	연구직	계	13	9	0	0	4	0	
학예연구사		8	8	0	0	0	0		
기록연구사		1	1	0	0	0	0		
농업연구사		4	0	0	0	4	0		
지도직	계	35	0	0	34	1	0		
	농촌지도관	3	0	0	3	0	0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5-26호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조례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4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 속 고충 제도개선 권고 사항인 공공체육 시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반영과
-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제한 조치 및 위반 행위의 공개를 통한 공공체육 시설 이용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환불 기준 및 면책 사항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 수단 확대(안 제3조)

- 신청 수단 : (당초) 군수의 허가 → (변경) 군수 또는 통합예약시스템

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및 예약현황 공개(안 제3조)

- 통합예약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 공개

다. 사용료 환불 처리 기한 신설(안 제8조)

- 처리 기한 : 사유 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반환

라. 사용료 반환에 관한 면책 기준 확대 및 구체화(안 제8조)

- 면책 기준 : (당초) 천재지변 및 우천 → (변경)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고가 발생 혹은 발생 예고된 경우

마. 체육시설 이용 제한 기준 및 조치 내용 구체화(안 제9조)

- 조치 내용 : (당초)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변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 제한 기준 : (당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변경)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개정조례안

- 불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고 : 체육사업소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30 경북 예천군 예천읍 양궁장길 38, 예천군 체육사업소
- 전화 : 054-650-6424
- 팩스 : 054-650-6429
- 전자우편 : sorama83@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체육사업소(전화: 054-650-64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를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예천군에서 관리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 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및 환급부서의 여건에 따라 반환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

환”을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으로 한다.

제9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u>군수의 허가를 받아야한다.</u>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3조(체육시설의 사용) ①----- ----- <u>사전에</u> <u>별지 제1호서식의 예천군체육시설</u> <u>사용허가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u> <u>에게 제출하거나 예천군에서 관리</u> <u>하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u> <u>하여야 한다.</u> ----- -----.
② · ③ (생략) <u><신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군수는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등록된 예약신청 승인 건에 대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예약현황(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u>
제8조(사용료의 반환)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u>	제8조(사용료의 반환) <u>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를 사유발생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및</u>

제8조(사용료의 반환) 1·2 (생략) 3. <u>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액 반환</u> 제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u>아니할 수 있다.</u> 제9조(사용료의 반환) 2·3·4 (생략) 1. <u>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u> 2. ~ 4. (생략)	<u>환급 부서의 여건에 따라 반환 기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u> 제8조(사용료의 반환) 1·2 (현행과 같음) 3. <u>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 혹은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u> 제9조(사용제한) ----- ----- ----- <u>아니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u> 제8조(사용료의 반환) 2·3·4 (현행과 같음) 1. <u>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u> 2. ~ 4. (현행과 같음)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다. 삭제 <2013. 8. 6.>~~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자치법규명)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2. 소관부서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 관 부 서	예천군체육사업소	작 성 자	이름	이재성
	부서장	김미라		직급	지방행정서기
				연락처	054-650-6424
	팀 장	김수호		이메일	sorama83@korea.kr
3. 관계법령 • 고시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등	○ 피규제집단 : 예천군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단체 ○ 이해관계자 : 해당없음				
5. 규제존속기한	5년 재검토 기한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 체육시설 이용 제한 및 조치 내용 구체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 체육시설 이용 제한 내용 명시화 - (당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변경)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체육시설 조치 내용 구체화 - (당초)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변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8. 참고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사항				

2.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 체육시설 이용 제한 내용 명시화(안 제9조)
 - (당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변경)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의 행위 명시로 구체적 위반 사례 근거 마련
- 체육시설 조치 내용 구체화(안 제9조)
 - (당초)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변경)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

⇒ 구체적 조치 근거 마련으로 행정 집행력 강화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u>아니할 수 있다.</u>	제9조(사용제한) ----- ----- ----- <u>아니하거나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할 수 있다.</u>
제9조(사용료의 반환) 2·3·4 (생략) 1. <u>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u> 2. ~ 4. (생략)	제8조(사용료의 반환) 2·3·4 (현행과 같음) 1. <u>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u> 2. ~ 4. (현행과 같음)

3.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체육시설 이용 제한 기준이 '공익을 해할 우려' 등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 구체적 위반 사례에 대한 일관된 조치가 어려움
- 음주 소란, 무단 흡연, 취사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시설 훼손 사례가 반복되나, 이를 명확히 제재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
- 위반 행위가 지속되면서 다른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관리자의 민원 대응 부담 증가

나. 규제의 신설(또는 강화)의 필요성

- 위반행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준수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위반 시 30일 이내 이용 제한 및 위반행위 공개의 구체적 조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집행력을 강화
- 구체적 제한 규정은 안전사고 예방, 시설 훼손 방지, 이용 만족도 향상 등 공공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 기반 마련에 필요

다. 대안검토

- 체육시설 이용 제한 및 조치 내용 미 개정 시(현행 유지 시)
 -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공익 저해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여 현장에서의 일관된 집행이 어렵고, 반복되는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력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규제 실효성 측면에서 적절한 대안으로 보기 어려움

라. 기대효과

- 공익 훼손 행위의 예방 및 이용 질서 확립

- 안전사고 및 시설 훼손 감소
- 행정 집행력 강화 및 민원 감소
- 이용자 만족도 향상 및 건전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

4. 규제의 비용·편익의 비교 분석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없음

나. 규제에 따른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이번 규제 강화는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를 줄여 시설 훼손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고, 동시에 이용 환경이 개선되어 만족도가 높아지고 민원이 감소하는 등 사회적 편익도 커서, 규제로 인한 제한보다 전체적인 이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5.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음주·흡연·취사행위 등 공익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명시하고, 위반 시 적용되는 이용 제한 기준과 조치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규제 내용의 객관성을 통해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한층 강화되었음
- 이에 따라 규제의 적용 범위와 판단 기준이 분명해져 일관된 행정 집행이 가능해졌으며, 이용자 또한 규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규범 환경이 마련됨

6. 결론

-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관리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 규제 준수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편익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

며, 무엇보다 공공체육시설의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조례 규정의 정비가 필수적이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 규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됨

7. 관계법령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